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김진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35
----------	-------

발의연월일 : 2024. 4. 16.

발 의 자 : 김진표 · 박용진 · 이병훈
홍성국 · 전해숙 · 이상헌
송갑석 · 소병철 · 오영환
김철민 · 이개호 · 고용진
기동민 의원(13인)

제안이유

현행 헌법은 제10장(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에서 헌법개정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등 헌법개정안 발의 이후 절차만 개략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회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더라도 발의에 앞서 헌법개정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여·야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명문의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헌법은 국가체제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범임에도 우리 헌정사의 헌법개정 과정을 보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참여가 충분하게 보장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었음. 현행 헌법 이후 급속하게 이루어진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고려할 때, 이제는 국회가 숙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필요로 하는 헌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인구위기 등 국가공동체 존속과 국가경쟁력 근간을 결정하는 장기적 국가과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헌법 규범으로 담아내어 입법 및 행정 권력의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처럼 중대한 국가의제의 실천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회가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국회에 헌법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헌법개정 사항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헌법개정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과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전문가로 구성되는 헌법개정자문위원회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설치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의 헌법개정 과정에 수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국회가 정치·경제 상황 변화에도 헌법개정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개정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헌법개정을 위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국회의 역할을 명시함(안 제3조).

나. 「국회법」 제45조의2에 따라 두는 헌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 방향 논의,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 관련 안건 심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되, 헌법개정기초안 작성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필요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헌법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안 제6조).

라.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거나 국회의장이 정한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를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둘(안 제8조).

마. 500명 이상이 선정되는 국민참여위원은 성별·연령별 및 지역별 분포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출하되, 직업 등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선정함(안 제9조).

바. 누구든지 국민참여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회는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大韓民國憲法」 개정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이 헌법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개정을 위한 회의체의 운영과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개정안”이란 「大韓民國憲法」(이하 “헌법”이라 한다)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된 헌법개정의 의안을 말한다.
2. “헌법개정기초안”이란 헌법개정안의 제안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헌법특별위원회가 작성한 헌법개정안의 초안을 말한다.

제3조(국회의 의견 수렴) 국회는 헌법개정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헌법특별위원회

제4조(헌법특별위원회의 직무) 「국회법」 제45조의2에 따른 헌법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와 조문의 내용 등에 관한 논의
2. 헌법개정기초안의 작성
3. 헌법개정에 관한 청원 등 헌법개정에 관한 안건의 심사
4. 헌법개정에 관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의견 수렴
5.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및 관련 안건의 심사
6. 그 밖에 헌법개정 준비 및 헌정제도 개선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헌법개정기초안의 작성) ① 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기초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의결을 할 때에 제6조제2항에 따른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의견서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의 결과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헌법개정기초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회의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헌법개정기초안을 국회의원에게 배부하고, 국회공보 및 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제6조(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한다.

1. 특별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헌법개정의 방향·취지와 조문의 내용, 헌법개정기초안 작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특별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헌법의 각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가 의결로 정한다.

제4장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제8조(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 설치) ①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의제 또는 국회의장이 정한 의제에 대한 공론조사를 위하여 국회에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이하 “국민참여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국민참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서를 국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한다.

1. 제1항에 따른 의제에 대한 국민참여위원의 공론조사
2. 제1항에 따른 의제와 관련하여 국민참여회의가 공론조사 외에 제출할 내용이 있다고 결정한 사항

제9조(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국민참여회의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과 제2항에 따라 선정한 500명 이상의 국민참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장은 국민참여위원의 선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18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성별에 관한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한 주민등록자료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국회의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송부받은 주민등록자료를 토대로 무작위로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 국민참여위원을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추출된 주민등록자료, 작성된 후보자명부 및 국민

참여위원의 성별·연령별 및 지역별 구성비율은 전체 인구통계와 유사하게 비례하여야 하고, 국민참여위원 선정 시에는 직업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민참여회의 위원장은 국민참여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부위원장은 표결과 공론조사 응답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국민참여회의는 국민참여회의 위원장·부위원장과 9명 이하의 국민참여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국민참여회의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론조사를 수행할 때에 관련된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국민참여위원(국민참여회의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간 토론을 거치되, 국민참여위원의 의사 결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단) ① 국민참여회의의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에 지원단을 둔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 국가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에 대하여 국민참여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1조(불이익 처우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참여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각종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및 실비변상) 자문위원회 위원 및 국민참여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교통비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홍보와 교육) 국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헌법개정 및 헌정제도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